

# 제46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19.3.5.(서면심의)

## □ 안건명: 이문고가 외 1개소 주변 도로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

위 안건에 대한 제46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「조건부채택」 의결함

### 【주요 심의내용】

- ‘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 검토’ 항목을 추가할 것
  - 지하차도를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교통량을 고려한 차로수 확보, 안전운행을 고려한 차로 폭 확보 및 중·횡방향 경사에 대한 사전 검토 등
- 조사 업무에 기 실시한 ‘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’를 포함하여 분석·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
- 타당성 조사임을 감안 용지조사는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한 검토를 하고 성과품 구성에서 구조계산서는 제외할 것
- 서울특별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지반정보 통합DB를 이용 기존 지반조사 자료들을 조사 활용토록 할 것

첨부 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 끝.

본 검토서는 2019.2.28.(목) 18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이문고가 외 1개소 주변 도로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교통	<p>제1장 총칙</p> <p>제5절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5.1 적용기준 및 시방서 (추가)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(국토교통부)</p> <p>제3장 타당성조사</p> <p>제3절 교통영향분석 및 평가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: 교통현황조사 분석 및 도로체계 개선에 따른 수요예측,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을 주 내용으로 하므로 아래와 같이 항목명칭 변경 및 내용 보완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.3.2 장래 교통여건 전망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: 과업의 세부내용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, 교통수요 예측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명칭을 '장래 교통수요 예측' 으로 변경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.3.3 기타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: 명칭은 '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' 으로 변경하고 '대처방안' 보다는 '개선방안'으로 문구 수정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19년 2월 28일

심의위원 : 허 정 아 

본 검토서는 2019.2.28.(목) 18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이문고가 외 1개소 주변 도로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도로	1. 과업내용서상 오타 수정 (1) 제3장 타당성조사 제4절 3.4.6의 1의 “환경성” 중복으로 제외 2. 기본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 검토 (1) 지하차도를 사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교통량 고려 차로수 및 안전운행 고려한 차로폭 확보 및 중, 횡방향 경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제안(사례 : 도심지 특성상 최소 차로폭 및 급한 종방향 경사 설계 등 지양) (2) 특히 지하차도인 만큼 유지보수 공사시행이 더욱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용성과 환경성이 충분히 고려된 구조물 및 도로포장재료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제시 (3) 침수 고려한 배수기능 확보를 위한 최신 배수기법 및 지하차도 방수층 설치방안 등 대책 제시 (4) 1.5.1 적용 기준 및 설계기준에 서울시 도로포장 관련 공사 및 재료에 대한 지방서 검토 (5) 공사 추진 및 향후 공용중 발생가능한 환경적인 요인을 충분히 감안한 시공이 될 수 있는 공법(최신 비산먼지/미세먼지 저감기능이 고려된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공법 등) 검토	
종합의견	상기 검토사항에 대하여 조건부 채택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	

2019년 2월 28일

심의위원 : 이 상 염 

※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한글파일 별도 송부)

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이문고가 외 1개소 주변 도로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토목 구조	<p>1. 과업이 목적에서는 고가차도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사업 개선 방안으로 되어 있으므로,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경우, ‘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’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,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. * 실시해야 하는 경우, 제2장 조사 업무에 상기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함.</p> <p>2. 4.2.2.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의 내용으로 볼 때, 금회 타당성조사 내용에서 지반조사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</p> <p>3. ‘현 시설물에 대한 상태 조사’ 내용 추가 필요. → 기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실시한 시설물로 판단되므로 해당 내용을 조사, 분석한 사항을 조사 업무에 추가할 것.</p> <p>4. 프로그램의 승인에 있어서는 범용해석 프로그램인 MIDAS프로그램은 추가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.</p> <p>5. p22 단위의 사용에 있어서는 C.G.S 단위 → SI 단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</p>	
종합의견	(월안채택, 조건부채택, 재심) 조건부 채택	

2019년 2월 28일

심의위원 : 이 왕 철 (서명)

검토서는 2019.2.28.( ) 18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이문고가 외 1개소 주변 도로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1. 이문고가 외 1개소 주변 도로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는 이문, 도림고가의 철거를 포함한 과업으로 조사업무에 기존 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하는 업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.</p> <p>2. 본 과업이 타당성 조사임을 감안하면 지장물 조사는 관련기관의 서류 확인을 통한 개략검토가 바람직하며 구조물 설치 및 저축구간에 탐사장비를 사용한 확인은 기본설계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</p> <p>3. 본 과업이 타당성 조사임을 감안하면 용지 조사는 관련기관의 서류 확인을 통한 개략검토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.</p> <p>4. 타당성 조사의 성과품의 구성에서 구조계산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	

2019년 2월 28 일

심의위원 : 문 훈 기 

※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한글파일 별도 송부)

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이문고가 외 1개소 주변 도로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
	<p><b>1. 제4절 일반사항에 ‘과업내용의 변경조건’ 항목을 추가할 것(p3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</li> <li>가.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</li> <li>나.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</li> <li>다.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</li> <li>라. 천재지변, 전쟁,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</li> <li>마.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,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</li> </ul> <p><b>2. 업무협의를 및 공정보고에 ‘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(Time Sheets) 제출’ 을 추가할 것(p4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( 월)</p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                 성 명 :           인                  책임기술자 :    인             </div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월/일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투입시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휴일(야간)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근무시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수행업무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b>3. 제2장 조사업무에 ‘지반조사’ 항목을 추가하여 기존의 지반조사 자료들을 조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(p13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특별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(<a href="http://surveycp.seoul.go.kr">http://surveycp.seoul.go.kr</a>)</li> <li>-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(<a href="http://www.geoinfo.or.kr">http://www.geoinfo.or.kr</a>)</li> </ul> <p><b>4. 제2장 조사업무, 제2절 조사내용에 ‘기존 자료 조사’ 항목을 추가하여 기 수행된 유사 용역 및 공사 비교·분석토록 할 것(p13)</b></p> <p>※ 참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서대문 및 아현고가차도 철거공사(도시기반시설본부, 2012)</li> <li>▶ 약수고가차도 철거공사(도시기반시설본부, 2011) 등</li> </ul>	월/일	투입시간	휴일(야간)	근무시간	수행업무	비고	1						..						30						
월/일	투입시간	휴일(야간)	근무시간	수행업무	비고																					
1																										
..																										
30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합의견	<b>조건부채택</b>																									

2019년 2월 일  
 심의위원: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갈